더샵 거제디클리브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비규제지역]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안드로이드 | 아이폰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더샵 거제디클리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더샵거제디클리브.kr) 로 운영됩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서류제출 및 관람, 계약체결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 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 접촉체온계, 정부 지침에 따른 출입자 명단 기재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절차 시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방문 시 최단시간 내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감염증 확산 추세 변동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상담을 위해 상담전화 회선(1661-3007)를 운영할 예정이오나, 유선상 문의건이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상호 오인하거나 누락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제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7.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29.(목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1910055**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7.(목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356 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제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 적격 판정 목적에 한정되며,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과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인증방식을 통한 청약신청 불가)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PC, 스마트폰앱)**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08월 03일(화요일)	08월 10일(화요일)	08월 11일(수요일) ~ 15일(일요일)	08월 16일(월요일) ~ 18일(수요일)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접수 및 현장접수	방문 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 서류제출은 8/15(금)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당사 견본주택(경남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1.7.5.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76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13개동 총 1,288세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497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 주택	2021910055	01	074.9775A	74A	148	104	103, 203, 303, 403, 503, 603, 703, 803, 1103, 2403
						106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201, 1401, 1601, 1801
						110	202, 204, 302, 404, 502, 504, 602, 604, 702, 704, 802, 904, 1002, 1004, 1104, 1202, 1302, 1402, 1404, 1602, 1702, 1704, 1802, 1804, 1902, 2002, 2004, 2102, 2104, 2202, 2302, 2402, 2502
						111	101, 201, 301, 401, 501, 601, 701, 901, 1001, 1301, 1501, 1601, 1901, 2101, 2201, 2501
						112	101, 103, 203, 301, 303, 401, 501, 601, 603, 701, 703, 801, 901, 903, 1001, 1003, 1101, 1103, 1201, 1203, 1403, 1501, 1503, 1601, 1603, 1701, 1703, 1801, 1901, 1903, 2001, 2003, 2101, 2103, 2201, 2203, 2301, 2401, 2501
						113	102, 103, 202, 203, 302, 303, 502, 503, 602, 702, 703, 802, 803, 902, 1003, 1103, 1202, 1302, 1303, 1402, 1403, 1503, 1602, 1603, 1702, 1703, 1802, 1803, 2002, 2003, 2102, 2103, 2202, 2203, 2302, 2402
		02	074.9759B	74B	45	112	102, 202, 302, 402, 502, 602, 702, 802, 902, 1002, 1202, 1302, 1402, 1502, 1602, 1702, 1802, 2002, 2102, 2202, 2302, 2502
						113	104, 204, 304, 404, 504, 604, 704, 804, 904, 1004, 1104, 1204, 1304, 1404, 1504, 1604, 1704, 1804, 1904, 2104, 2304, 2404, 2504
		03	084.9981A	84A	38	101	303, 403, 703
						103	103, 203, 303, 502, 1403
						106	103, 402, 1202, 1402, 1803, 2103
						107	101, 201, 301, 401, 2201, 2301
						109	102, 201, 302, 401, 402, 901, 1802
						110	103, 203, 303, 403, 703, 1803
						111	102, 103, 302, 505, 1205
		04	084.9988B	84B	216	101	101, 201, 301, 401, 501, 601, 801, 901, 1001, 1201, 1401, 1601, 1801, 1901, 2001,
						102	101, 104, 201, 204, 301, 304, 401, 404, 501, 504, 601, 604, 701, 704, 801, 901, 904, 1001, 1101, 1301, 1401, 1501, 1601, 1701, 1801, 1804, 1904, 2001, 2101, 2201, 2301, 2401
						103	305, 405, 505, 605, 905, 1005, 1505, 1605
						104	101, 201, 301, 401, 501, 701, 801, 901, 1001, 1301, 1401, 1501, 1701, 1801, 1901, 2101, 2401,
						105	101, 104, 201, 204, 301, 401, 404, 501, 504, 601, 604, 701, 704, 801, 804, 904, 1004, 1104, 1501, 1601, 1604, 1701, 1801, 2001, 2101, 2201, 2501
						106	105, 205, 305, 405, 505, 605, 705, 805, 905, 1005, 1105, 1205, 1405, 1505, 2105, 2205, 2305
						107	104, 204, 304, 604, 704, 904, 1704
						108	101, 104, 201, 204, 301, 304, 401, 404, 501, 504, 601, 604, 701, 704, 801, 901, 1301, 1401, 1501, 1701, 1704, 1801, 1901, 2101, 2201, 2301
						110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101, 1201, 1301, 1401, 1501, 1601, 1701, 1801, 1901, 2101, 2201, 2301, 2401, 2501
						112	105, 205, 305, 405, 505, 605, 805, 1005, 1305, 1405, 1705
						113	101, 105, 201, 205, 301, 305, 405, 501, 505, 601, 605, 701, 705, 801, 805, 901, 905, 1001, 1005, 1101, 1201, 1205, 1301, 1305, 1401, 1505, 1601, 1605, 1701, 1801, 1805, 2001, 2005, 2301
		05	084.9933C	84C	8	102	102, 103, 402
						105	302
						108	102, 903, 1003, 2102
		06	084.9954D	84D	42	101	102, 202, 302, 502, 602, 802
						103	104, 204, 404, 604, 704, 904, 1104, 2404
						104	202, 302, 402, 502, 602
						106	204, 304, 404, 504, 904, 1304
						107	302, 402, 1002, 1102
						109	103, 803, 2203
						111	104, 204, 404, 504, 604, 704, 804, 904, 1304, 1904
	합 계				497	-	-

■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 05. 27)에 따릅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당첨자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전입일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원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추가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단독 세대의 경우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1.07. 29.(목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1.08.16.(월요일) ~ 08. 18.(수요일) 10:00 ~ 17: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상기 당첨자 서류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 따라 계약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계약일 지정 예약 사이트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 따라 **추첨 참여 신청 및 동·호수 추첨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무순위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공고 및 추첨 참여 신청 : 2021. 08. 19.(목요일) 10:00 ~ 16:00** (www.더샵거제디클리브.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추첨 진행방식과 잔여세대 동·호수를 확인하시고 참여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참여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호수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순위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추첨 및 발표 일시 :**

추첨 : 2021. 08. 20(금요일) 10:00 / 발표 : 2021. 08. 20(금요일) 13:00

※ 추첨은 주택형별 예비순번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된 동·호수는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 2021. 08. 20.(금요일) 14:00 ~ 17:00 / 2021. 08. 21.(토요일) 10:00 ~ 17:00**

(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계약일 지정 예약 사이트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5.27.)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더샵거제디클리브.kr)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

■ 분양문의 : 1661-3007